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법률 제19840호, 2023. 12. 26. 공포, 2024. 6. 27. 시행)됨에 따라,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 중 하나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(안 제5조제2항)

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제2호 중 “보건복지부령”을 “교육부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) ① (생략)	제5조(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(「영유아보육법」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보건복지부령</u> 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	2. <u>교육부령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